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29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이원택·최민희·이병진

권칠승 · 김윤덕 · 김승원

문대림 • 문진석 • 임호선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이용·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그대상이 되는 사업을 각각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쳐야 하고, 바다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또는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함.

한편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하려는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또는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로 인하여 골재채취 단지를 지정한 후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각 단계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나,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 단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시에 한 차례의 해양영향평가만을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후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치고 추후 허가를 할 때에는 다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어, 행정절차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임.

이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해양이용협의가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골재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삭제 및 제13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이나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①	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① -
처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	
을 받아야 하는 해양이용 · 개	
발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	
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	
부장관과 해양이용협의를 하여	
야 한다.	
1.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u><삭 제></u>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해양이용 · 개발사업	
(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	
다)을 하려는 사업자는 처분기	
관의 장에게 면허등을 받기 전	
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	
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	
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 「골재채취법」 <u>제22조</u>에 따 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 사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 정이 필요한 사업
- 2. ~ 9. (생략)
- ② · ③ (생 략)

·
1 <u>제21</u> 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이나 같은 법 제22조
ο ο (청체코 가ბ)

- 2. ~ 9.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